

의안번호	2203142
의 퇴 인	조정훈 의원
회 답 일	2024.09.04.
추계번호	24C2919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14149호 부칙 안 제2조 (유효기간)	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31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법률 제14149호 부칙 안 제2조 (유효기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법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종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3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제8조제2항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- 법 제8조제2항은 선행교육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“고등학교에서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·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중·고등학교 중 농산어촌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¹⁾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

1)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(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)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(이하 “밀집학교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.

1. 교육감이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

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소득층 밀집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”에서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(이하 “선행교육”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개정안은 해당 법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,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비교시 해당 과정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는데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□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“법 제8조제2항의 선행교육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재정지원”이 될 것이나,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·도교육청 별로 상이하고 개정안 시행 후 선행교육 방과후과정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함

-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, 수익자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임²⁾
-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, 선행교육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이 허용된 학교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 운영할지 여부는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됨
- 한편,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 ‘기준재정수요액’에 “방과후학교사업비”를 포함하고 있으며, 2024년에는 ‘방과후학교 사업 지원’에 총 4,286억원을 교부하였음
 - －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은 도시 2,231억원과 농산어촌 2,055억원으로 구성되며, 도시는 학급당 평균 1,203천원이 반영되었고, 농산어촌은 학급당 평균 4,400천원이 반영되었으며,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을 감안하여 단위비용에 대한 적용률이 차등 적용되었음³⁾⁴⁾
- 또한, 시·도교육청단위에서의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(지원)청 등의 재정지원은 시·도별로 상이함

다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

2.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

2) 2023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(2022.12. 한국교육개발원)

3)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(2024.03. 교육부)

4)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」 [별표 1]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·측정단위 및 산정기준

-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재정지원(저소득층 지원 등)은 시·도별로 상이
- 이에 개정안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의 선행교육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해당 과정을 개설할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등을 현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곤란함
-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선행교육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 여부 및 재정지원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한 경우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

측정항목		측정단위	산정공식	단위비용
7. 방과후 학교 사업비	가. 방과후 학교 사업지원	학급수	1) 읍·면 지역 및 도서(島嶼)·벽지(僻地)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× 단위비용 2)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× 단위비용	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